

4 (第125回-運營第1次)

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

□회 기 : 2001. 3. 13(화) ~ 3. 27(화), 15일간

□의사일정

일시	부 의 안 건	비 고
3. 13(화) 14 : 00	※ 개회식 1. 제12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.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. 서울특별시장·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.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	
3. 14(수)	○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 관한질문(1일차)	
3. 15(목)	○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 관한질문(2일차) ※ 본회의 휴회결의 : 3. 16 ~ 3. 26(11일간)	
3. 16(금)~ 3. 26(월)	○ 상임위원회 활동	본회의 휴회
3. 27(화) 14 : 00	1. 안건처리	

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
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발의년월일 2001. 3. 13
발 의 자 : 차 성 환 위원
찬 성 자 : 이 해 식 위원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6.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화해,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남북교류·협력사업을 의회차원에서

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“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발의년월일 2001. 3. 13
발 의 자 : 차 성 환 위원
찬 성 자 : 이 해 식 위원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